

산유국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과 소비국의 대응방향

1.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배경

'70년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고가격정책은 세계의 석유 수요를 감퇴시키는 한편, 非OPEC 산유국의 석유생산량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非OPEC 산유국의 증산은, 자원 내셔널리즘의 대두에 따라 이권을 상실하게 된 메이저가, 특히 리스크가 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탐사 및 생산활동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에 들어 石油수요의 감소와 산유량의 증가로 공급과잉 상태가 표면화 되면서, 원유가격은 대폭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非OPEC 산유국의 석유판매회사는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판매가격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OPEC 산유국은 이 기간 중 공식판매가격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원유가격의 하락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공식판매가격의 인하를 단행하였으나, 이같은 가격인하는 항상 뒷북을 치는 격이 되었기 때문에, 현물 시황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경향이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OPEC 산유국은 항상 판매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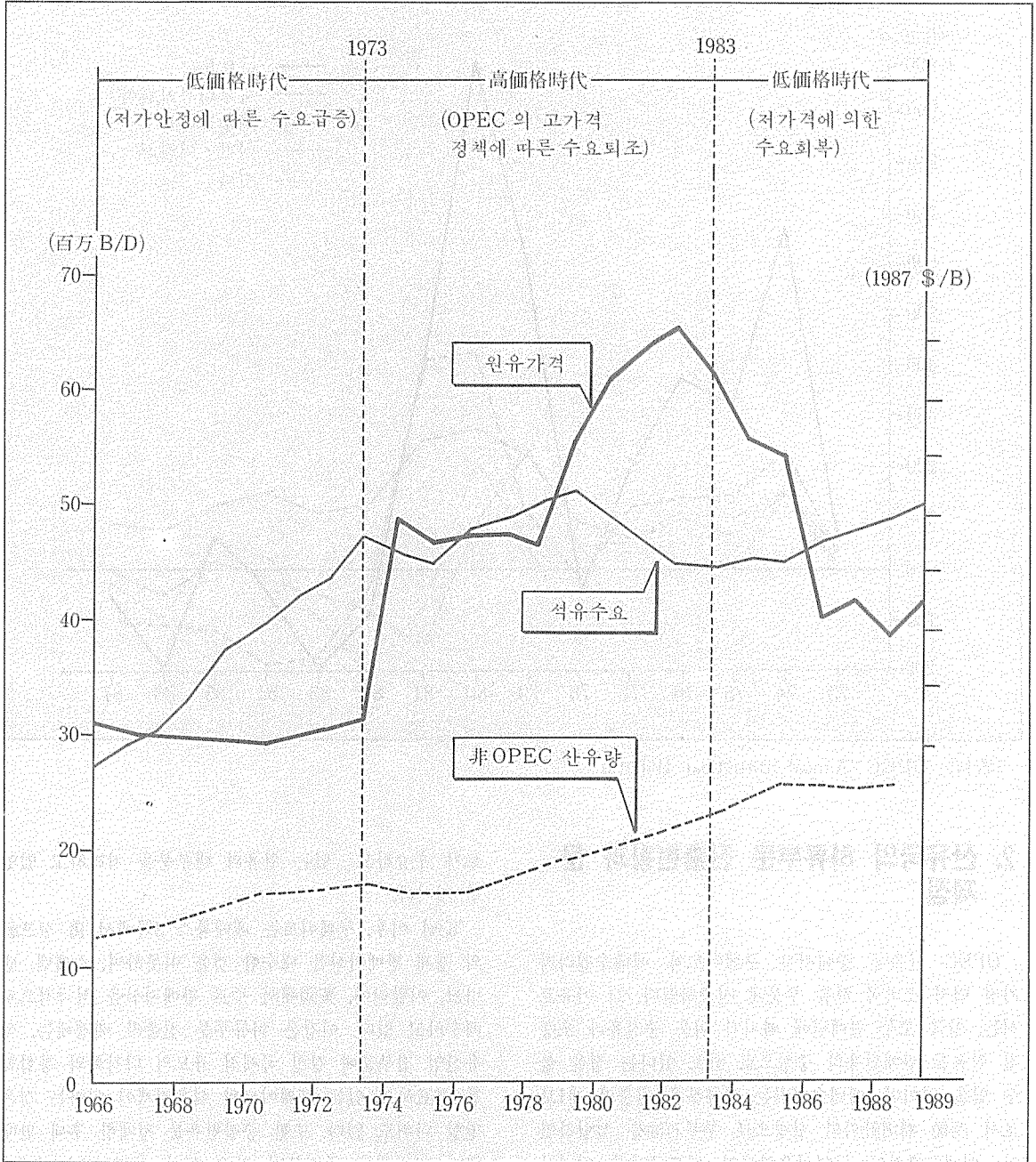
石油수출량의 감소와 유가의 하락에 따라, '80년에는 2,8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던 OPEC의 석유수출액(석유수출액)이, 그 후 대폭 감소하여 '85년에는 1,30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石油은 OPEC 산유국 수출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국제수지면에

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어, 石油수출의 감소와 유가 하락은 OPEC 산유국의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80년 1,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던 경제수지 흑자는 '81년에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82년에는 73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다.

장기화되는 공급과잉의 상황속에서, OPEC 산유국은 판매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판매형태, 수출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판로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국 하류부문의 진출은 이같은 수출형태 다양화의 일환이며, 그 최대의 목적은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국으로의 진출은, 제휴회사 및 관련 자회사에 대한 원유의 공급가격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공식판매가격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제품 수출을 포함하는 하류부문의 진출에 따라, 원유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제, 판매부문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유수입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한 동기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하 산유국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동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유 및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② 제품판매에 의한 부가가치의 향상
- ③ 상류·하류부문에서의 수익성 분산화
- ④ 자산의 운용
- ⑤ 합리적 조업기반의 획득

〈그림 - 1〉 자유세계의 석유수요·원유가격 및 非OPEC의 산유량 추이



〈資料〉 BP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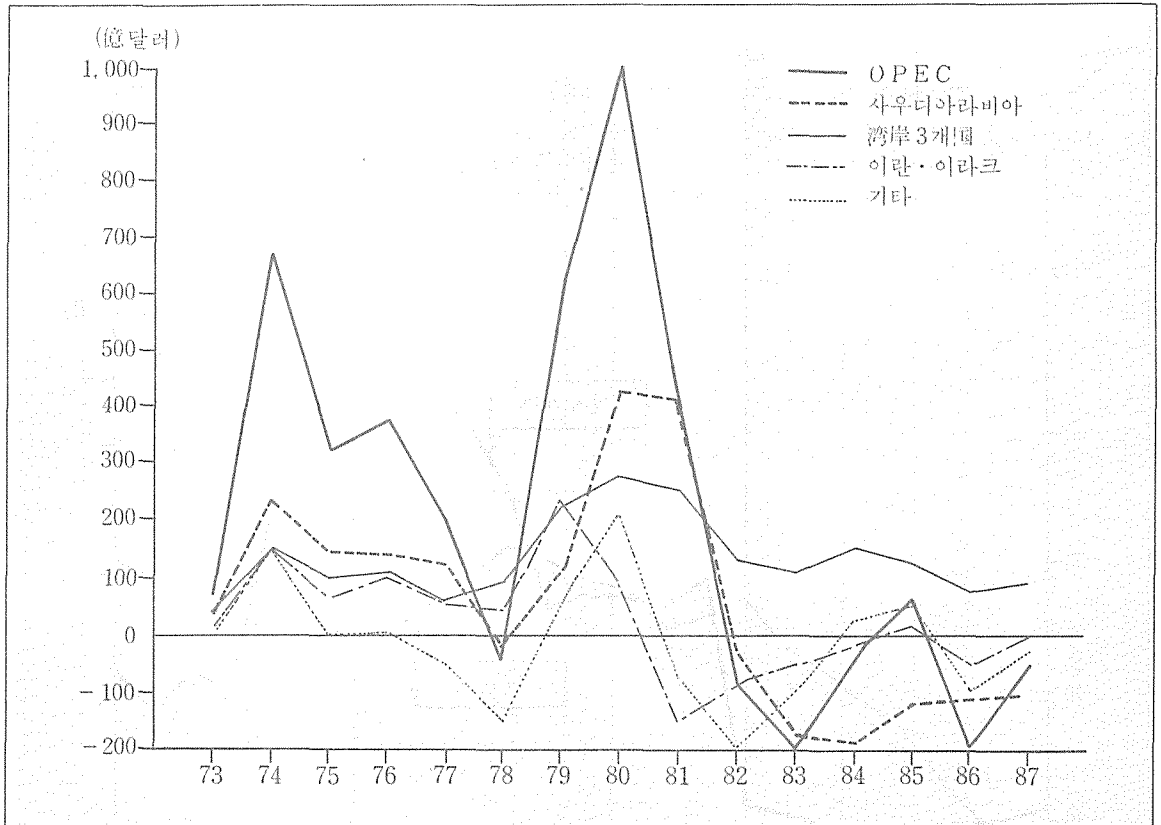
원유가격은 1945년~1985년까지는 아라비안 라이트의 라스·타메라 출하시

1986년~1987년까지는 브렌트의 Spot 가격

1988년은 PIW의 브렌트의 Spot 가격 평균, 1989년은 17.5달러로 상정

1988~89년 수요는 IEA, Oil Market Report 의 신장률에서 산출

〈그림 - 2〉 OPEC 의 경상수지 추이



〈資料〉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현황과 문제점

OPEC 산유국 중에서는 쿠웨이트와 베네수엘라가 가장 먼저 소비국 하류 부문에 진출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양국 모두 판매난에 빠지기 쉬운 중질유나 초중질 원유를 판매원유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하류부문 진출의 제1보로서 西獨 웨버사와의 합병으로 루루石油을 설립하였다.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벤과 웨버사 간에는 중질유의 분해기술 관계로 이전부터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웨버사의 정유공장에는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원료로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쿠웨이트가 매수한 걸프사의 정유공장도 예전부터 쿠웨이트가 수출하고 있는 원유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가 수출하고 있는 원유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83년 이후, 쿠웨이트는 베네룩스 3국에서 舊 걸프사의 정제 판매자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英國에서 주로 판매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같은 하류부문 진출의 배경에는, 석유산업 전부분에 걸친 국제적 규모의 다각화와 통합화를 목표로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석유정책이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중질원유를 정제한 후에 판매한다는 방침을 중전부터 갖고 있던 쿠웨이트는 '86년 9월에는 자사 브랜드(Q8)을 판매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하류부문으로의 진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며, 근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極東지역이 그 제1목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石油부문 이외에서도 투자를 행하여 자산의 운용을 꾀하고 있는 등, 타 산유국과는 다른 면도 갖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83년 이후 하류부문에 대한 참입을 개시하고 있지만, 동국의 경우는 경·중질 원유를 중심으로 한 기존 유전의 노후화에 따른 중질원유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정제업자에 대한 자본참가를 추진하여 왔다. 자본 참가시, 베네수엘라는 그때마다 원유의 공급권을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하류부문 진출에 의한 원유공급 계약량은 45만 b/d에 이르고 있다. 목표는 70만 b/d로 되어 있지만, 국내 정유공장과 임대하고 있는 큐란정유공장에 대한 원유공급량을 합치면, 베네수엘라의 石油생산량은 거의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베네수엘라는 근년 오리말존 유전의 상

업화에 적극적이며, 가까운 장래에 英國, 캐나다에서 판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비국 하류부문의 진출에 관해서는, 당초 수출 정유공장의 건설에 의한 석유제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이것은 기대한 만큼의 메리트를 얻지 못하였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생산조절자 역할의 포기 등 석유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져, '87년 경부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던 소비국 하류부문의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타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텍사코社와의 합병으로 스타 엔터프라이즈사를 설비하기에 이르렀다.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이번 텍사코社와의 합병을 하류부문 진출의 제1보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100만 b/d 이상의 원유 공급권을 수반하는 합병사업을 西歐

〈표 - 1〉 산유국의 歐美소비국 하류부문 진출형태 및 현황('89. 1. 현재)

| | 진 출 형 태 | 정제능력 (1000B/D) | 주유소수 | 石油공급계약량 (1000B/D) |
|-----------|---------------------------|-------------------|--------|----------------------|
| 쿠 웨 이 트 | 100% 자산매수에 의한 자회사 의 설립 | 213 | 4,840 | 250 |
| 베 네 수 엘 라 | 50% 출자에 의한 합병 사업에 의 참가 | 1,159 | 7,500 | 615 |
| 사우디아라비아 | 50% 출자에 의한 합병 사업에 의 참가 | 615 | 11,450 | 600 |
| 리 비 아 | 일부 주식의 취득에 의한 사업 에의 참가 | 195 | 1,750 | 145 |
| 아 부 다 비 | 일부 주식의 취득에 의한 사업 에의 참가 | 290 | - | 60 |
| 맥 시 코 | 일부 주식의 취득에 의한 사업 에의 참가 | 220 | - | 80 |
| 노 르 웨 이 | 100% 자산의 매수 | 65 | 900 | 75 |
| 中 國 | 50% 출자에 의한 합병 사업에 의 참가 | 55 | 0 | 30 |
| 計 | | 2,812 | 26,440 | 1,855 |
| 유 럽 國 | | 1,525 | 7,490 | 795 |
| 美 國 | | 1,287 | 18,950 | 1,060 |

또는 極東에서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석유산업이 처해 있는 현황을 이해하면서, 국제 석유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안정적 석유공급선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국내 석유산업의 재편과 最大 最良의 국제석유회사 형성에 착수한 것이다.

이같은 산유국의 진출에 따라, '89년 1월 현재 산유국은 歐美의 소비국 시장에 있어서 정제능력의 281만 b/d(출자비용 기준으로는 136만 b/d)를, 주유소 수에서는 2만 6,440개소를 소유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그 진출형태도 쿠웨이트처럼 매수에 의한 100% 자회사의 설립,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50% 출자에 의한 합병사업으로의 참가, 그리고 리비아, 아부다비와 같이 석유회사의 일부 주식 취득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표-1>.

최근에는, 하류부문에서의 수익성 향상으로 정제업자가 고수익을 가져오는 자산의 매각을 주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산유국에서 새로운 합병회사를 설립할 상대 후보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될 것이다<표-2>. 또한, 하류부문에 대한 진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OPEC 협정에 의한 생산량의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자국의 계열회사·자회사에 대한 공급의무 때문에 OPEC가 통일된 감산행동을 취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진출이 과대하게 되면 소비국의 개입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쿠웨이트는 서구를 비롯하여 極東 및 美國에 대한 참입을 열망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100만 b/d 정도의 합병사업을 西歐, 極東에서 행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산유국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은,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비교적 여유있는 페르시아 만안 산유국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2> 美國의 정유공장 매수코스트 추이

| | 계 약 수 | 정제능력 (1,000B/D) | 계약능력 (1,000B/D) | 2차설비 장착률 | 총 액 (百萬달러) | 달러 / 処理能 力 (B/D) | 달러 / 2차설 비 능력 |
|------|-------|--------------------|--------------------|-------------|---------------|---------------------|------------------|
| 1983 | 5 | 40-320 | 499 | 9.1 | 198 | 397 | 44 |
| 1984 | 3 | 35-200 | 285 | 10.6 | 219 | 768 | 72 |
| 1985 | 6 | 25-125 | 367 | 8.4 | 163 | 444 | 53 |
| 1986 | 6 | 30-320 | 650 | 10.1 | 696 | 1,071 | 106 |
| 1987 | 4 | 9-46 | 130 | 6.5 | 123 | 946 | 146 |
| 1988 | 3 | 126-250 | 871 | 9.3 | 1,163 | 1,335 | 144 |

<註> 2차설비 장착률은 Nelsen Complexity Index (높은 가격 정도에 따라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資料> PIW '88. 8. 15.

3. 소비국의 대응

이같은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을 소비국별로 본 경우, 정제능력에서 차지하는 산유국의 보유분은 美國에서 4.7%, 西獨 14.4%, 덴마크 68.9%(이 중, 노르웨이의 스타트 오일이 40%를 차지한다). 스웨덴 4.9%, 네덜란드 5.5%, 이탈리아 2.9%, 스페인 10.2%로 되어 있으며, 10개국 합계로는 5.4%로 되어 있다. 또한, 주유소 수에서 차지하는 산유국 보유분은, 일부 불투명한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10개국 합계인 21만 5,730개소 정도 가운데 1만 6,530개소를 보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 美 國

세계 최대의 石油시장인 美國의 경우, 파인 정제시설의 합리화는 '84년에 거의 완료되었으며, 그 후는 수요 증가도 있어, 대형 석유회사의 정제 판매부문의 수익은 대폭 개선되고 있다. 근년, 하류부문의 중요성이 점점

〈표 - 3〉 소비국별, 산유국 소유 하류시설 비율

| 소 비 국 | 정제능력(1000B/D) | | | 정 유 공 장 수 | | |
|---------|---------------|--------|-------------|-----------|--------|-------------|
| | 총 능 력 | 산유국보유분 | 산유국보유비율 (%) | 총 수 | 산유국보유분 | 산유국보유비율 (%) |
| 美 國 | 15,419 | 720 | 4.7 | 120,150 | 9,480 | 7.9 |
| 英 國 | 1,803 | 0 | 0 | 20,640 | 1,340 | 6.5 |
| 西 獨 | 1,518 | 219 | 14.4 | 20,050 | 0 | 0 |
| 덴 마 크 | 177 | 122 | 68.9 | 不 明 | 960 | 不 明 |
| 스 웨 덴 | 427 | 21 | 4.9 | 不 明 | 1,040 | 不 明 |
| 네 델 란 드 | 1,381 | 76 | 5.5 | 8,500 | 250 | 2.9 |
| 벨 기 에 | 631 | 0 | 0 | 6,100 | 350 | 5.7 |
| 룩셈부르크 | 0 | 0 | 0 | 不 明 | 300 | 不 明 |
| 이 탈 리 아 | 2,450 | 71 | 2.9 | 35,300 | 2,810 | 7.9 |
| 스 페 인 | 1,285 | 131 | 10.2 | 4,990 | 0 | 0 |
| 10개국 합 | 25,091 | 1,360 | 5.4 | 215,730 | 16,530 | 不 明 |

〈註〉 산유국 보유분은 출자비율분, 정제능력은 '89년 1월 OGJ 치

증대하고 있는 와중에서, 美國 시장은 산유국에 있어서도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美國 시장에 대한 산유국의 참입에 대하여, 美國정부는 소비국과 산유국과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고, 석유시장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 일단 OPEC 제국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산유국의 참입을 긍정하고 있는 배경에는, 산유국의 참입이 아직 부분적이라는 점, 산유국의 투자액도 소액이라는 점이 있다. 즉, 美國에 참입하고 있는 산유국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中國의 3개국인데, 그 참입 형태는 모두 합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제설비의 보유비율을 볼 경우, 베네수엘라가 38만 b/d로 美國 총능력의 2.5%, 사우디아라비아가 31만 b/d로 2.0%, 中國이 3만 b/d로 0.2%이다. 3개국 합계로는 72만 b/d(출자비율분)에 불과하여, 美國 총능력의 4.7%를 차지하는 데 지나지 않고 있다. 주유소 수에 있어서도 美國의 전체 주유소 수 12만개소 중 베네수엘라가 7,500개소, 사우디아라비아가 1만 1,450개소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美國 石油부문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보면, '86년 말의 총 투자액은 296억 달러(전산업 2,100억 달러의 14%)인데, 그 88%를 BP, R.D.Shell 등 유럽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OPEC로부터의 투자는 극히 일부이며, 석유관련 주식의 소유액도 1,700만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구나 美國은 해외의 석유회사에 대하여, 국내에 대한 투자액의 2배 이상인 61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그림-3). 이같은 산유국의 참입정도, 투자상황을 근거로 美國정부는 OPEC 산유국의 참입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 의회내에는, 에너지의 안전보장 증진을 자유시장 정책에 맡긴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장래 에너지 안전보장의 면에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즉, 산유국의 참입은 현재 그다지 주목되고 있지 않지만, 산유국에 의한 하류부문의 자산획득은 추진되는 환경에 있으며, 이것은 특정 산유국에서의 石油수입량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석유수입 의존도는 제2차 석유험기 후, 석유가격 하락의 영향도 있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량의

증대는 곧 OPCE 석유에 대한 의존도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것은 에너지의 안전보장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산업계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합병사업을 개시한 텍사코는 이 합병사업을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자사 재건

〈표-4〉 산유국의 침입에 대한 美國의 시각

| | 소비국 하류부문 침입에 대한 시각 | 비 고 |
|---------------|--|---|
| 정 부 | 소비국과 산유국의 이해관계를 강화하여 석유시장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OPEC 제국의 소비국 하류부문에 대한 진출을 긍정하고 있다. | 자유시장 정책에 의한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 유출을 지지하고 있다. |
| 의회관계자 | 현재는 그다지 주목되고 있지 않지만, 중대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산유국에 의한 하류부문 자산의 획득은 추진되는 환경에 있으며, 이것은 특정산유국에서의 石油 수입량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
| 텍 사 코 | 자사 재건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산가치의 최대화책이다. 텍사코, 사우디 쌍방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장차 美에 에너지안전보장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20년에 걸쳐 40억 배럴의 사우디 원유공급확보. • 자금면에서는 18억달러의 메리트. • 수익의 변동이 심한 하류 부문 사업에서 수익을 고정시켜 훌륭한 파트너를 구함. |
| A P I | 산유국의 진출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유국과의 합병은 기업에 있어서 반드시 메리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독 립 계 석 유 업 자 | 산유국 자본과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산유업자는 전멸하게 될 것이다. | 텍사코, 사우디의 합병에 대하여 텍사스주 사법부에 조사를 신청하였지만 却下되었으며, 계속하여 재무성에 국가안전보장의 면에서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이것도 却下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독립계석유업자의 강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텍사스주에서는 외국정부에 의한 자산매수를 제한하는 법안 성립의 가능성도 있다. |

책의 일환으로써, 향후 자산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같은 합병사업은 텍사코, 사우디아라비아 쌍방의 이익 뿐만이 아니라, 美國의 에너지 안전보장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같은 합병사업에 따라 텍사코사는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40억 배럴의 사우디 원유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石油소비량의 3.5%에나 상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금면에서는 18억달러의 메리트가 발생하였으며, 게다가 수익의 변동이 쉬운 하류부문 사업에서 수익을 고정시켜 줄 좋은 파트너를 얻었다」고도 말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대형 석유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으로서, 美國석유협회(API)에서는 산유국의 진출에 대하여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산유국과의 합병은 기업에 반드시 메리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美國의 석유업계에 있어서 합리화는 이미 끝난 상태이며, 현재로는 가동률도 높고, 수익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유국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형 석유회사의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독립계 석유업자 중에는, 「산유국 자본과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소규모 산유업자는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는 업자도 존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却下되었지만, 이같은 위기감을 반영하여 텍사코, 사우디의 합병사업에 대하여, 텍사스주의 독점법에 위반한다고 하여 텍사스주 사법부에, 또한 국가안전보장의 면에서 재무성에 조사의 요구를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독립계 산유업자를 갖고 있는 텍사스주에서는 산유국 정부에 의한 하류부문 진출에 대해서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2) 英 國

英國의 경우, 산유국의 진출은 '86년 이후 쿠웨이트가 헤이즈社, 울트람社, 나프타社의 판매자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영국내 투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수한 예로서 대처 정권의 민영화책에 그 시초를 두고있는 쿠웨이트의 BP株 취득문제를 거론해 보겠다.

우선, 쿠웨이트의 BP주 취득경위와 英國정부의 대응

을 보면, '87년 11월에 쿠웨이트는 BP주 약 10%를 취득한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에 대하여 BP로서는 10월의 블랙 먼데이 직후라는 점도 고려하여, 처음에는 새로운 대형 장기 기관투자가는 언제나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 후, 쿠웨이트의 BP株 보유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여 21.6%로 증가해 감에 따라 BP의 월터 회장은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한 보유로, 장래에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英國 정부도 K10의 주식 매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의는 없지만, 보유율의 상승에 따라 주식 매입수를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英國정부 및 BP의 반응에 대하여 쿠웨이트는 BP에 임원을 파견하지 않고, 경영에도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는 한편, 29.9%까지의 주식매수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英國 정부는, 당초 공정거래부에 BP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계속해서 독점합병위원회에 공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받아 '88년 10월에 K10에 대하여 BP의 주식 보유 비율을 21.6%에서 1년 이내에 9.9%로 인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후, 주식의 매각기간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BP가 자사주 7억 9,000만주(11.7%)를 24억 파운드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 쿠웨이트의 BP주 취득문제는 일단 결론을 보게 되었다. 英國에는 외국인에 의한 주식취득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英國정부는 어찌서 이같은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던가를 다음에 살펴 보겠다.

英國정부의 결론은 K10에 대하여 BP의 持株비율을 현재의 21.6%에서 1년 이내에 9.9%로 인하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英國 독점합병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쿠웨이트 정부와 BP간에는 합병상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익에 반하여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익문제에 관한 조사에서, 특히 우려된 항목이라는 것은 다음의 3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① 쿠웨이트정부가 BP의 탐사, 개발, 생산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② 석유대체품등 BP의 연구개발 활동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표 - 5〉 英國 독점합병위원회의 결론

- (1) 쿠웨이트 정부와 BP 간에 존재하는 합병상태는 공익에 반하여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쿠웨이트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보유율이 9.9%가 되도록 보유주의 매각을 쿠웨이트 정부에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다. (9.9%는 주주총회, 투표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
- (3) BP 주에 관하여, 질서있는 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매각은 12개월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③ 쿠웨이트와의 관계가 BP의 능력과 증자 및 매수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쿠웨이트와 합병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BP에, 그리고 BP는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즉, 이 같은 합병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여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英國 정부는 K10에 대하여 BP株의 보유율을 인하하도록 결정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국가 전략상 매우 중요한 국책회사인 BP가 OPEC의 주요 멤버인 쿠웨이트의 영향하에 놓여지는 것은 英國의 에너지 안전보장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英國 정부의 쿠웨이트에 대한 BP株 방출명령은 산유국 정부에 의한 소비국 대형 석유회사의 주식취득을 명확히 제한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英國 정부가 취한 단호한 자세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역시 그 특수성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K10에 9.9%의 BP株 보유를 인정한 것은 외자 환영의 자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산유국이 英國의 하류부문에 진출할 경우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3) EC 위원회

다음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EC위원회의 대응을 살펴보면, 산유국의 역내 하류부문 진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태도다.

특히, 소비시장의 판로확보를 목표로하고 있는 산유국과 시장가격에서의 원유 안정공급을 추구하는 정제업 쌍방간의 보완적 이해를 양립시키는 합작투자는 상호간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유럽의 정제, 판매회사에 있어서 산유

국의 투자는, 투자설비 고도화를 위한 투자 및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 산유국측이 하류부문에서의 리스크를 분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익이 될 것이며, 참가 협정중에는 유리한 조건하에서 원유의 공급을 보증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관련회사의 수익성 향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석유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구주의 정제업이 기업활동의 통합을 확대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EC위원회로서는 산유국의 역내 정제, 판매 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타 경합기업이 추종하고 있는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C가 산유국의 투자를 환영할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유국의 투자가 EC시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장기 계약일 것.
- ② 산유국에 의한 매수 합병회사의 설립이 EC원유 공급원의 다양화를 현저하게 깨뜨리지 않을 것. EC가 문제로 하는 것은 EC 전체 공급원의 다양화에 대해서이며, 한 가맹국의 공급원에 편중이 생기더라도 EC 전체로서의 공급원의 의존이 특정 산유국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정 산유국에 대한 적정 의존도에 대해서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20%는 지나치게 크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 ③ 현재 진행중인 EC의 석유산업 합리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 ④ 신설된 산유국의 자회사 합병회사가 경합기업과 동일한 경쟁 조건하에 있을 것. 이것은 산유국이 풍부한 자금력과 低價의 원유를 이용하여 부당한 염가 판매등을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

⑤ EC로서는 EC 회원국 이외에 OECD 국가도 산유국의 투자에 대하여 마찬가지로의 태도를 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산유국의 투자에 의한 메리트도 부담도 OECD 가맹국은 평등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EC역내의 기업을 둘러싼 합병 매수는 관계국의 규제 외에, EC의 법률, EC당국의 제반조치에 따라서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EC에는 기업매수 활동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규칙은 없지만, 회원국의 기업합병에 관한 개시요건, 기타 법적 수속의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상, 유럽제국 모두 산유국의 참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것에는 일치하지만, 그 기본 자세 및 개입에 대해서는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하 국별로 그 대응을 살펴 보겠다.

(4) 西 獨

산유국에 의한 자국의 정제 판매부문 투자에 대한 西獨 정부의 일반적 입장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그것이 西獨 석유회사와의 합병이라고 하는 형태일 경우, 산유국의 투자에 따라 西獨 기업과 산유국 간에 상호의존 관계가 높아지게 되어, 산유국에도 석유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의무가 발생, 최종적으로는 西獨의 에너지 안전보장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산유국의 진출이 西獨의 기본적인 에너지정책, 石油정책에 저촉될 경우에는 환영받지 못한다.

西獨은 지방분권과 私의경제 시스템을 정치 경제의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도 연방정부의 직접 개입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시장원리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석유 위기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경험한 후,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경쟁력 있는 가격에 따라,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에너지원의 안정공급 확보를 도모한다고 하는 정책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 이용
2. 石油의존도의 低減 및 대체에너지의 활용
3. 에너지, 특히 石油공급원의 다양화
4. 환경보존

'86년의 대폭적인 유가하락과, 마르크高에 따라 石油

구입가격은 더욱 저하되었다. '86년 9월에 책정된 연방경제성의 에너지 보고서는, 지금까지 西獨의 에너지정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가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西獨의 정제 판매부문에 대한 산유국의 투자는, 동국의 기본정책인 石油의존도의 감축 및 석유공급원의 다양화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西獨의 정제 판매부문에는 웨버社와의 합병으로 베네수엘라가, 주식 취득(7.0%)이라는 형태로 리비아가 진출하고 있다. 西獨 정부는 웨바, 페트로브의 합병문제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가 OPEC 회원국이라고는 하지만, 中東 산유국과 같은 정치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아, 西獨 석유공급원의 다양화정책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의 코스탈社에 대한 자본참가에 대해서는, 최근 리비아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西獨의 석유공급원 다양화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中東 석유에 대한 의존은 대폭 저하되었다. 따라서 근년에는 西獨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英國이었는데, 리비아의 세어가 급증하여 어느 새 최대의 공급국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하여 西獨 정부는 리비아가 아랍제국 가운데서도 서방국에 대하여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언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西獨정부로서는 산유국의 진출이 자국의 기본적인 에너지, 석유정책에 저촉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하고 있다. 단, 개입의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고, 파트너인 西獨 기업에 대한 설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西獨 정부로서는 정부와 석유업계간에는 깊은 신뢰 관계가 존재하고, 석유회사로서도 양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정부의 설득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5) 네덜란드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은, 참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는 '83년 舊걸프의 자산매수라는 형태로 쿠웨이트 石油가 진출하였으나 이 쿠웨이트와 걸프의 거리에 대하여 정부

는 반대하지 않았다. 산유국의 진출이 네덜란드의 에너지 안전보장에 줄 영향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네덜란드는 제1차 석유위기에 美國과 함께 OAPEC의 석유禁輸의 대상국이 되었으나, 석유금수와 같은 사태는 특이한 현상이며, 전세계적인 석유 흐름을 고려할 경우, 향후 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안전보장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 최대급의 메이저인 로얄 더치 셸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과 북서유럽에 세계의 무역센터인 로테르담을 갖고 있다는 네덜란드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산유국의 소비국 하류부문에 대한 투자는 산유국의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 만일 산유국이 被투자국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금수 등을 했을 경우, 被투자국 정부는 산유국 자산의 동결, 接收 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산유국은 被투자국의 시장 세어를 상실하게 되고, 소비자인 국민의 반발은 장기적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한번 상실한 세어를 회복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산유국의 소비국에 대한 진출은 산유국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써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산유국의 진출이 현재와 같이 쿠웨이트 1개국이고, 국내시장에서의 세어도 작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에너지 안전보장에 대한 낙관론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그와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내세어의 30% 정도를 갖고 세계 최대급의 석유회사인 로얄 더치셸의 주식, 산유국이 쿠웨이트의 BP株 취득 케이스와 같이 매입한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유국의 진출에 관하여 소비국측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로서, 산유국의 자회사 내지는 합작회사가 저코스트의 원유를 무기로 세어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을 할 우려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소위 부당덤핑은 獨禁 정책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쿠웨이트 석유의 자국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부당덤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쿠웨이트측도 이에 대하여 자국자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가

격인하는 산유국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 걸프가 종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주유소에 대한 마진을 증가시켜, 판매인센티브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고 있으나, 가격경쟁에는 뛰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쿠웨이트 석유가 부당덤핑과 같은 것은 향후에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당덤핑에 대해서는 코스트평가 등 관점이 상당히 어려우나, 만일 그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정부로서는 기업에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와 석유회사의 관계는 양호하며,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석유회사가 희망하는 한, 직접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6) 스페인

스페인 정부의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에 대한 태도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석유산업은 현재 EC 통합을 향하여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스페인 정부와 석유업계 모두 자유화된 구주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의 정제, 판매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유국의 투자를 충분히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정부와 석유업계의 입장이다.

산업에너지부의 담당자에 따르면, 스페인의 석유회사는 원유자원도, 국내생산도 거의 없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산유국의 자본참여에 의한 산유국과의 관계강화는 원유의 안정공급을 확보함과 동시에, 스페인 석유산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스페인의 에너지안전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되고, 또한 산유국의 자본참여에 의해 스페인의 석유회사는 자유화로 향한 내의활동강화를 위한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메리트가 된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 석유산업 모두 쿠웨이트 石油가서구 또는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매수에 의한 100% 자회사의 설립이라는 형태로 스페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으로서 표면상으로는 어떻게든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스페인 시장에서의 참여는 스페인 자본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페인정부와 석유회사의 의향은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와 세프사(Cepsa, 국내세어 15%

정도)의 교섭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88년 IPIC는 셰프사株 10%를 취득함과 동시에, 셰프사의 원유수요의 1/3에 상당하는 6만 b/d의 원유를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셰프사에게 있어서 아부다비는 원유의 안정공급원임과 동시에,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구주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자금을 원조하여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스페인정부는 스페인의 정제회사를 통합, 그룹화하고, 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셰프사에 대해서는 페트로 메드(Petromed, 국내 세어 7~8%)와 합병시킬 계획이었으나, IPIC가 셰프사株의 보유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문제가 생겼다. 즉 스페인정부는 아부다비의 셰프사株 보유율의 확대로 이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셰프사의 대주주였던 Banco Central도 자신의 지배력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아부다비측이 요구를 받아들여, 셰프사에 대한 지분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한편으로는 Banco Central은 자신의 셰프株 보유율을 25.6%까지 확대시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페인 정부로서도 이에 따라 셰프사와 페트로메드의 통합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스페인의 정부와 석유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유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산유국측으로서도 관련 석유회사의 경영권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자국 원유의 안정판로가 된다는 메리트는 향유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불리한 거래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인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他 유럽제국과 달리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86년과 '87년에는 EC의 기준에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외국투자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외국인 투자자가 스페인에서 기업매수를 하기 위해서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게 되고 있다. 단, 부동산투자 또한 스페인기업에 대한 50% 이상의 주식취득은 행정당국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다. 이 행정절차의 목적은 법적 및 국제적 요건이 충족되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7)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석유정책과 에너지정책에 관해서는 상공성 등의 省廳보다도 오히려 국영 산유국의 소비국 정제·판매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ENI의 방침이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상공성의 사고방식은 외국자본의 참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이며, 독금법에 의한 규제 등도 별로 없으며, 이점은 산유국의 하류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 진출의 에너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도 국내시장의 40~50%의 세어를 갖고 있는 ENI-Agip 그룹이 존재하는 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탈리아도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력한 실정이다. 현재 EC통합을 향해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英國이나 西獨에 비하면 규제는 아직도 많다. 이탈리아는 외국자본의 참여나 철수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외자도 민족계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석유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제11차 석유위기 이후 중간지정제 기지의 역할감소, 정유공장의 가동률저하, 채산성 악화 등 외에 '82년 정부가 도입한 제품가격 규제에 실망한 메이저 각사는 이탈리아에서 점차 철수하였다. 이들 대신에 진출한 것이 쿠웨이트와 리비아 등 산유국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이탈리아 경제의 활성화, 수익성의 향상을 배경으로 셸 그룹이 재진출을 시도하는 등 메이저 복귀의 움직임도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와 같은 외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개입하고 있지 않다. 이탈리아 정부는 강력한 ENI의 힘에 뒷받침을 받으면서, 이탈리아의 석유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여 떠나는 외자는 붙잡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외자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에너지 및 석유정책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ENI의 Franco Reviglio 총재는 상호 참여 방식에 의한 산유국, 소비국 협력의 일환으로서 산유국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을 인정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의 석유자산(석유 5억 배

럴과 가스 750억 입방미터(석유환산 1억 배럴)을 5억 달러에 매입하여 상류부문에 진출하였다.

(8) 日本

明治시대에 日本의 석유산업은 日本石油(주)와 寶甲石油(주)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1880년대(명치 23년) 후반부터 美國의 스탠다스社와 英國의 사무엘 상회(후에 로얄더치셀)등 2개의 외국 석유회사가 등유의 수입에 따라 日本시장에 참여하였으며, 日本기업 2사와 함께 주로 등유의 판매권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日本의 석유기업과 외국자본과의 제휴는 없었으며, 이러한 제휴가 이루어진 것은 1949년 부터이다. 즉

1945년에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되었으나, 日本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석유정제업의 피해가 커서 생산설비의 피해율은 58%로 제조업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 그전에 美國의 對日정책은 태평양연안의 정유공장에 대해 일체 그 복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日本해안에서의 소량의 원유채굴과 그 정제만의 자급자족을 위해 허용한데 지나지 않았다. 日本의 정유공장은 전부 Scrap화 하였으며, 제품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美國의 정책은 1949년에 크게 전환되어, 日本의 기존 정유공장을 복구시켜, 제품수입을 원유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침하에 태평양연안 정유공장의 재개와 원유의 수입이 허가되기에

〈표-6-1〉 西歐 각국의 산유국 참여에 대한 기본방침

| | 西 独 | 네 덜 란 드 |
|---------|---|--|
| 기 본 자 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환영 ● 합작방식에 의한 참여는 상호 의존관계가 높아지고, 석유의 장기적인 안정 공급을 확보하게 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는 자유 ● 안전보장에 주는 영향은 플러스라 판단하고 있다. |
| 현황과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네수엘라가 정제능력의 9.9%, 리비아가 정제능력의 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웨이트가 정제능력의 55% ● 쿠웨이트가 주유소의 2.9% |
| 정부의 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西独의 기본정책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설득에 의한 개입을 함. (기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이용 -석유 의존도의 저감, 대체에너지의 활용 -에너지, 특히 석유공급원의 다양화 -환경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에 대한 일반적 규제 및 수단은 없음 ● 부당덤핑에 대해서는 개입함. |
| 비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바, 페트로민의 합작사업에 대해서는 西独에 대한 석유공급 다양화 대책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한편, 리비아의 코스탈에 대한 자본참여에 관해서는 이와 관련 리비아 원유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급의 메이저인 로얄 더치셀과 석유무역센터인 로테르담을 갖고 있어 에너지안전보장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표-6-2) 서구 각국의 산유국 참여에 대한 기본방침

| | 스 페 인 | 이 탈 리 아 |
|---------|---|---|
| 기 본 자 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환영 - 정세관매부문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유국의 투자를 활용한다. 또한 산유국과의 관계강화는 원유의 안정공급과 연결된다. 100% 매수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은 경쟁의 격화를 초래하므로 부정적이며, 스페인 자본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의 참여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본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 |
| 현황과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가 정제능력의 5.8% ● 아부다비가 정제능력의 2.3% ● 쿠웨이트가 정제능력의 2.1% ● 석유제품수요의 신장이 기대되고 있고 자유화의 과정에 있어, 향후에도 진출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웨이트가 주유소의 4.2% ● 리비아가 정제능력의 2.9% ● 리비아가 주유소의 3.7% |
| 정부의 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전기통신서비스,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인가신청필요. ● 현재 자유화 과정에 있으며, 규제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참여 규모가 큰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의 석유정책에 따름. |
| 비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 '87년에는 외국투자법이 개정되어사 전승인의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어졌다. ● 아부다비의 세프사지분비율이 20%로 확대를 승인함에 따라, Banco Central의 지분비율을 25.57%로 높였다. ● 석유제품 판매를 모두 위탁받고 있는 캄프사의 해체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 통합을 위해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중이나, 영국, 서독과 비교하면 규제는 아직 강력하다. ● 중요한 산업분야의 80%는 여전히 국가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국내시장의 40~50% 세어를 갖고 있는 ENI의 영향력이 크다. ● ENI 총재는 상호 참여 방식에 의한 산유국, 소비국 협력의 일환으로서 참여를 승인하는 것을 제창하였다. |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석유산업은 재출발하게 되었으며, 석유산업에 의해서 정제기술의 근대화화 정제시설 복구를 위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해외로부터의 원유의 장기안정 수입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日本석유산업을 조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고, 세계적인 석유자원의 소유자인 해외 석유회사와의 제휴가 유일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49년에는 미국인에 의한 재산취득에 관한 政令이 나왔으며, 익년에는 외자법이 제정되는 등 해외 석유회사가 日本 석유회사와 사업제휴가 이루어질 소지가 마련되어, 東燃, 日石, 三石, 昭石이라는 日本석유회사가 잇달아 해외 석유회사와 기술제휴, 위탁정제, 위탁판매 등의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아가 정제부분을 중심으로 한 자본제휴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東燃일본석유, 소화셀石油라는 회사는 엑슨/모빌 등의 외자와 자본제휴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日本의 직접투자규제의 현황을 보면, '67년 OECD 가입을 계기로 油外자본의 자유화조치가 강구되어, 현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업, 광업, 석유업 및 피혁 또는 피혁제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日本 석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자유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석유산업의 규제는 '86년의 휘발유, 등유, 경유

의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87년 6월에는 규제완화 세부계획이 발표되어, 석유정제 시설의 신증설, 휘발유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주유소 건설에 관한 행정지도도 '90년 3월까지 완화하도록 했으며, 원유처리량의 규제도 '92년 3월까지 폐지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日本의 석유업은 아직 외자규제를 하고 있는 4개분야 중의 하나이나,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강인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은 日本석유산업의 자유화, 국제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日本석유산업에는 엑슨, 모빌을 비롯한 외자도 참여하고 있어, 歐美의 경우 산유국의 자본참여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러한 흐름이 日本에 들어오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현재 이러한 산유국의 자본참여에 대하여, 정부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긴급시에 日本에 대한 석유공급의 확보나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인지, 또한 일본에의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상류부문 참여가 허용될 것인지 등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조건대로는 나쁘지 않은 이야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싼 원유가 들어온다면, 10% 정도의 출자에는 응해도 좋다」라는 견해도 나오

〈표-7〉 日本의 외자제휴회사와 그 내용

| | 제 휴 외 자 | 제 휴 내 용 |
|-----------|---------|---|
| 東 燃 | 엑슨, 모빌 | 兩 외자가 東燃에 50% 출자(각 25%) 엑소(엑슨), 모빌(모빌)에 100% 출자 제너럴은 49% 엑소 출자 기그나스는 50% 東燃출자 |
| 日 本 石 油 | 칼 텍 스 | 日石, 칼텍스 각 50% 출자로 일본석유정제 |
| 소 화 셀 石 油 | 셀 그 룰 | 셀그룹이 소화셀 석유출자의 50% 보유 |
| 三 菱 石 油 | 게 티 | 게티가 전부터 三石株를 50% 보유하고 있었으나 '84년 삼릉그룹이 이를 매수 |

고 있다. 그러나 산유국측으로서는 사우디가 50%의 주식보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는 해외 하류부문진출 목표를 근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정하고, 참여에 있어서는 반드시 종전의 100% 자산의 매수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업체 및 산유국의 의향을 종합해보면, 일본에 대한 참여형태로는 베네수엘라/첸바, 또는 사우디/텍사코와 같은 합작형식이라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장점으로서의 산유국과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가 강화된다는 점이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참여를 인정하는 대신에 산유국 상류부문의 진출 찬스를 만들게 되며, 원유의 안정공급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산유국의 참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산유국의 상류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원확보가 가능하고,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석유자원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日本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진출이 과잉되었을 경우 日本의 안전보장상 위험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공급원 다변화에도 저해될 것이다. 즉 어느 특정국가에 다량의 원유를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안전보장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산유국이 참여함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는 점도 예상할 수 있으며, IEA가 제창하고 있는 긴급시 등의 원유유통 시스템도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석유산업의 경우, 장점으로서의 제후회사로서는 안정적인 원유공급확보, 특히 수급이 타이트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자금조달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설비의 고도화로는 기업이 현재 수행하려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유국의 수출용 정유공장의 건설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점이 日本 정유공장의 가동을 상승, 나아가서는 日本석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제점으로서의 국가 對 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영상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日本기업은 구미기업과는 친숙하지만, 中東산유국은 종교·문화면에서 크게 다르고, 이 때문에 경영상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

〈표-8〉 日本의 직접투자규제 현황

| |
|---|
| (1) 원칙자유 (아래의 경우는 사전에 신고) |
| 1. 비공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 2. 공개株의 10% 이상의 취득 |
| 3. 회사의 사업목적변경에 관해서 행하는 동의 |
| 4. 지점, 공장 기타 영업소의 설치 |
| 5. 금전의 대부 |
| (2) 다음의 4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히 취급한다. (80. 12. 26 자의결정) |
|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코드상에서도 자유화를 유보 |
| 1. 농림수산업 |
| 2. 광업 |
| 3. 석유업 |
| 4. 피혁 또는 피혁제조업 |

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즉 제후회사만이 유리한 조건으로 원유공급을 받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점은 산유국이 공급가격에 차이를 두어 기업을 통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비국으로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더우기 채산이 맞지 않는 정유공장을 매수, 재가동시키게 되면 일본정제업의 합리화 추진을 저해할 것이며, 또한 안정적인 원유공급과는 반대로 구입원유의 선택범위가 축소되어 다른 값싼 원유가 있어도 구입할 수 없게 된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상상할 수 있다.

산유국의 日本 석유산업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규제완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산유국도 강한 진출의욕을 갖고 있다.

그리고 日本 석유산업에는 현재 액슨, 모빌이라는 외자가 이미 참여하고 있어, 향후 산유국의 참여만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